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158호

2025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에 따라 「2025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5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2.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5. 11. 11.(화) ~ 2025. 11. 26.(수) 18:00
   ※ 접수장소: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3. **참여대상**

❍ 2025. 10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제주도내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및 인증사회적기업

4. **지원인원**: 유급근로자 10명 내외

5. 지원기간 : 2025. 12. 01. ~ 2025. 12. 31.(1개월)

6. **지원수준**

❍ 지원내용 : **최저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

* 2025년 최저임금: 2,096,270원 (월 209시간 근로 기준)

❍ 지원금 산정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 비율 적용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적용)
-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근로시간별 지급액 산정 [단위: 원]

근로시간별 지원 비율		최저임금	지급액
		100%	70%
월 209시간	1일 8시간	2,096,270	1,467,389
월 183시간	1일 7시간	1,835,490	1,284,843
월 156시간	1일 6시간	1,564,680	1,095,276
월 130시간	1일 5시간	1,303,900	912,730
월 104시간	1일 4시간	1,043,120	730,184
월 78시간	1일 3시간	782,340	547,638

Ⅱ 참여기업 요건 및 제출 서류

1.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2. 참여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회서비스(사회공헌)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실적은 **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 다만,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별표 참고]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제출서류

※ 파일명은 반드시 아래 서류별 파일명 예시에 따라 작성하여 pdf로 제출
(파일 이름과 내용이 상이하거나, 중복 또는 관련성이 낮은 자료를 묶음으로 과다 제출 시 심사과정에서 누락 될 수 있음)

① 사업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붙임 제2호 서식]

③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붙임 제3호 서식], 관련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붙임 제4호 서식] 등)
* 공고일 전월말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④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024년도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필)

⑤ 2025년 10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붙임 제5호 서식] 및 관련 증빙 자료

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 제6호, 7호 서식]

⑦ 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 제8호 서식]

Ⅲ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1.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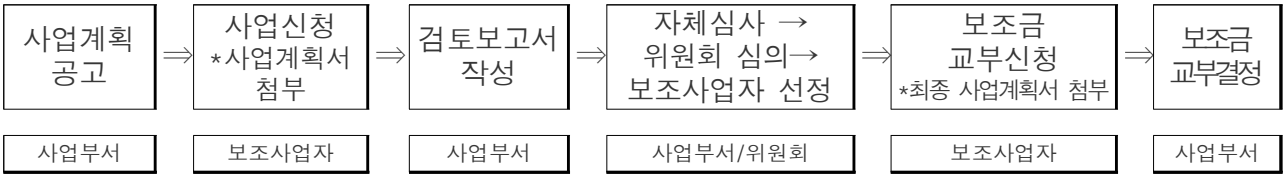

2. 심사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중심 심사

❍ 인증사회적기업 :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 중심 심사

❍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을 최우선 지원, 그 외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함 * 지원 인원은 사업 수행 가능성 등 감안 조정

(가) 사업내용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인 경우

(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또는 다수 기업이 참여하거나 다수 기관의 지원 등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라) 참여근로자 훈련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마)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실적이 있는 경우

(바) 2025년 제1차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신규 근로자(취약계층·일반계층·시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기업

Ⅳ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2025. 11. 11.(화) ~ 2025. 11. 26.(수) 18:00까지

2. 접수방법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751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7, 경제소상공인과(3별관 2층)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13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경제일자리과(1청사 본관 2층)

V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2.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3. 일자리창출 지원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자 및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도	경제정책과	064-710-4183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7513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13	

※ 제주권역 지원기관 :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064-726-4843) 내선번호 1

별표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붙임 제1호 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신청서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신청 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지역형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부처형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사회적기업	☐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주민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팩스)	Tel. (Fax.)
전자메일주소		담 당 자 (연 락 처)	성명: (전화:)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	취약계층 고용계획 인원	일반계층 고용계획인원	시간제근로자 고용계획인원
	명	명	명	명
사업내용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 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 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붙임 제2호 서식】

(앞쪽)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혼합형 ☐기타형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장소	☐ 시·도 ( ) ☐ 시·군·구 ( ) ☐ 사업장소 세부내용: ※ 참여근로자는 위 사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구분 (기준시점)		자체근로자			일자리창출사업			비고
		계	일반	취약계층	계	참여근로자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지원기간	예비1년	명	명	명	-	-	명	
	예비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1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3년	명	명	명	명	명	명	

<table>
<tr><td>참여근로자
수행업무</td><td></td></tr>
<tr><td>참여근로자
근로조건</td><td>주 근무시간, 월 임금, 기타 근무 조건</td></tr>
<tr><td>참여근로자
관리계획</td><td></td></tr>
<tr><td colspan="2">◈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td></tr>
<tr><td>목표 매출액</td><td>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td></tr>
<tr><td>산출근거
*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td><td>ex1) 목표 매출액 : 132,000,000원
- 산출근거
거래처 납품 : 20개소 X 약 200,000원 X 12월 = 48,000,000원
온라인 판매 : 3,000,000원 X 12월 = 36,000,000원
오프라인 판매수입 : 4,000,000원 X 12월 = 48,000,000원
ex2) 목표 매출액 : 420,000,000원
<table>
<tr><th>상품분류</th><th>평균단가</th><th>산출근거</th><th>연매출액</th></tr>
<tr><td>문구류</td><td>2,000원</td><td>2,000X5,000개X12개월</td><td>120,000,000원</td></tr>
<tr><td>의류</td><td>30,000원</td><td>30,000X500개X12개월</td><td>180,000,000원</td></tr>
<tr><td>전자제품 액세서리 류</td><td>50,000원</td><td>5,000X2,000개X12개월</td><td>120,000,000원</td></tr>
</table></td></tr>
<tr><td>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td><td></td></tr>
<tr><td>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td><td></td></tr>
<tr><td>수익금
사용계획</td><td></td></tr>
<tr><td colspan="2">◈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td></tr>
<tr><td>사업관리방안</td><td></td></tr>
<tr><td>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td><td></td></tr>
</table>

* 필요시 별지 작성

【붙임 제3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 실적이 없는 란은 미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①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제 공 분 야	세 부 내 용
(예시)간병서비스	(예시)지역 주민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② 사회서비스 세부내용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뉠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구분	무료 제공형[1]		할인 제공형[2]		일반형	계	
	수혜자수 (A)	금액 (a)	수혜자수 (B)	금액 (b)	수혜자수 (C)	수혜자수 (A+B+C)	금액 (a+b)
취약계층							
일반인							
계							

1) (정상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2) (할인한 금액을 표시)

2. 사회공헌 실적

(생산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으로 기재)

공 헌 내 용	수 혜 인 원(명)		사회공헌 총액
(예시)지역 저소득 아동, 조손 가정 대상 도시락 무료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취약계층		정상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일반인		
	계		

3. 지역 사회공헌 실적(기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사회공헌 내역을 구체적 기재)

(예시)지역 농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전량 구매 : 시장가격 이상 책정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72가구 대상 시래기 300톤, 3억 상당)
※ 매입가격 : 1㎏ 당 800원 (시장 평균가격 1㎏ 당 600원)

【붙임 제4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회서비스 내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붙임 제5호 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2025. 10월말 기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평균 임금(원) ③	근로 시간 ④	고용 형태 ⑤	직종 ⑥	사회적 기업관련 정부지원 여부	기타정부 지원여부
1	홍○○	2001. 2.3	남	해당없음	16.3.1	1,4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2004. 4.1	여	결혼이민자	16.3.1	1,500,000	40	무기 계약직	단순 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여성가장, 난민 등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붙임 제6호 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예	□아니오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예	□아니오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예	□아니오
5-1.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 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7-1. 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수행 기간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붙임 제7호 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나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나요	□예	□아니오
6-1. 참여근로자 중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나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나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 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수행 기간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붙임 제8호 서식]

보조금 지원신청서(원본 스캔하여 JPG로 첨부)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비영리단체(법인)등록번호(선택)		
	소재지	(우편번호 :)		회원수		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사 업 계 획 서(스캔 금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참여에 따른 기업별 인건비 지원	

□ 보조사업의 효과

○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확보 및 자생력 확보 도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 사업비 집행계획 ※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제외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1,442.51	
<작성 예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인건비	1,442.51	·최저임금 70% 지원 * 1 명 = 1,442.51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618.220	
<작성예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인건비	618.220	·최저임금 30% 자부담 * 1 명 = 618.220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단 체 소 개 서(스캔 금지)

[단체명 :]

<table>
<tr><td rowspan="2">주소 및
연 락 처</td><td>주 소</td><td colspan="3">(우 12345)</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3">•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td></tr>
<tr><td rowspan="3">등록 및
인력현황</td><td>등록기관</td><td></td><td>등 록 일</td><td></td></tr>
<tr><td>대 표 자</td><td>(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td><td colspan="2" rowspan="2">•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td></tr>
<tr><td>회 원 수</td><td></td></tr>
<tr><td>설립목적</td><td colspan="4">•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td></tr>
<tr><td>단체연혁</td><td colspan="4">•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td></tr>
<tr><td>예산현황
(2025년)</td><td colspan="4">•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수익(%),
기타(%)</td></tr>
<tr><td>주요사업
실 적
(2024년)</td><td colspan="4">•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td></tr>
<tr><td>주요사업
계 획
(2025년)</td><td colspan="4"></td></tr>
</table>

[참 고] 심사관련 검토자료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자료
사회적 가치	•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 비율	- 취약계층 고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유급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 2025년 10월말 기준
고용성과	• 고용규모	- 유급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 2025년 10월말 기준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 사업계획서
	• 매출성과	-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2024년도)